

사천시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49호)

1. 심사경과

- 가. 2003. 12. 12 : 이문상의원 외 6인 발의
- 나. 2003. 12. 12 : 운영위원회 회부
- 다. 2003. 12. 19 :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안전심의 요체가 되는 의안의 제출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사일정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소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적절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의안의 제출시기를 명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의안의 제출시기를 정함(안 제19조)
 - 소관위원회의 적절한 사전검토 시간이 확보 되도록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5일전까지”로 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합리적으로 의안 제출 시기를 정함

4.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정한용)

- 안전심의 요체인 의안의 제출시기를 정하는 의회 회의규칙으로서 회기개시 5일전까지 제출토록 정하는 것은 심도 있는 심사기일을 충분히 갖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이나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 없음